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173
----------	-----

제출년월일 : 2019.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대도시를 중심(성남, 전주, 청주)으로 특례시 지정 확대 추진(50만 이상되는 도시)이며,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는 추세이나, 군 지역의 지원방안은 미흡하여,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으로 국가와 지방에 대한 불신 가중,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인구수,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특례군) 법제화 필요
-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법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특례군 도입을 위하여 공동대응 협의회에 우리군도 참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명 :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 ※ 설립배경 :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km²) 40명 미만의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지역에 대한 지원은 미흡.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여 행·재정적 지원 마련 절실
- 참가현황 : 전국 24개 군

충청북도 (1)	단양군
인천광역시 (1)	옹진군
강 원 도 (9)	화천군, 양양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u>평창군</u> , 정선군, 영월군, 홍천군
전라북도 (5)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전라남도 (2)	구례군, 곡성군
경상북도 (5)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군위군, 봉화군
경상남도 (1)	의령군

○ 규약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능 등 (제1조 ~ 제4조)

- 목적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자치단체에 한해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 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됨.
- 기능은 ▲ 특례군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특례군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특례군 도입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특례군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함.

나. 임원 및 임기, 회장단 등 (제5조 ~ 제8조)

- 회장 1명, 권역별 위원수 감안 복수의 부회장 선임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회의는 정기회(연 2회), 임시회(재적위원 1/3이상 요구)로 구성

다. 의안의 제출 및 사무국 운영 등 (제9조 ~ 제15조)

- 회장이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 및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팀장이 됨.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

라. 협의회 재정의 재정 및 기타에 관한 사항 (제16조 ~ 제19조)

- 협의회와 실무협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
- 운영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

3. 참고사항

- 협의회 운영규약(안) 1부.
- 관련 법령 등 발췌 1부.
- ※ 예산조치 : 협의회 연간 부담금 200만원 반영

[붙임 1]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자치단체에 한해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 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 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특례군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특례군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특례군 도입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특례군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을 제출한 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실국이 설치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별도 지정)이 되고,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회장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특례군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 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부담)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 운영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액, 납부 방법 및 그 밖의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가입 지방자치단체명 (24개 郡)
충청북도 (1)	단양군
인천광역시 (1)	옹진군
강원도 (9)	화천군, 양양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홍천군
전라북도 (5)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전라남도 (2)	구례군, 곡성군
경상북도 (5)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군위군, 봉화군
경상남도 (1)	의령군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